

## 지역사회 협력·기여 운영규정

(제정 2018. 12. 1.)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학교 및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·기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)**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부서)** ①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관한 주관부서는 기획처 대외협력홍보실로 한다.

②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관한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.

유형	주요 활동	운영부서
지역산업 연계	- 지역기업 지원(공동연구, 기술지도 등)	기업지원센터
	- 지역산업 발전 지원	산학협력단
	- 창업 활성화 지원	창업화산센터
지역사회 봉사	- 지역 학생(중·고) 지원	입학사정팀
	- 영·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	산학협력단
	- 주민 시설 개방	총무지원실
	- 지역 문화 선도 활동	대외협력홍보실
	- 노인·장애인·청소년 복지	사회봉사센터
평생교육 제공	- 문화 교육 등 성인 기초 교육	평생교육원
	- 다문화 이주민 교육 지원	평생교육원
	- 직업 교육, 이직 교육 등 직장인 재교육 수료 발굴 및 제공 등	기업지원센터
지자체 협력	- 지역종합발전 계획 하에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부여	기획예산실
	- 지자체 사업 지원, 전문 인력 제공	산학협력단

### 제2장 지역사회협력위원회

**제4조(설치)**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하기 위해 지역사회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교내·외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

③ 입학부처장, 기획부처장, 산학협력부단장, 사회봉사센터장, 사회적경제협업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

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대외협력홍보실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.

1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수요분석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 성과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사회 협력·기여에 필요한 사항

**제7조(소위원회)** 지역사회 협력·기여 유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8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3장 운영절차

**제9조(종합계획 수립)** ① 기획처장은 매 학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 협력·기여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·기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지역산업 연계 계획
2. 지역사회 봉사 계획
3. 평생교육 제공 계획
4. 지자체 협력 계획
5. 그 밖에 지역사회 협력·기여 계획에 관한 사항

**제10조(운영계획 수립)**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별 운영부서는 종합계획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사업운영)**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은 운영부서의 부서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.

**제12조(운영결과 제출)** 운영부서는 매 학년도 활동별 운영결과를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종합보고서)** ① 기획처장은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 
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 결과를 자체평가보고서에 수록할 경우 종합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.

### 제4장 환류체계

**제14조(환류체계)** 기획처장은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환류체계를 구축하고, 그 결과를 대학경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, 지역사회 협력·기여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업무개선)** ① 기획처장은 종합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

개선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운영부서의 장은 이에 관한 개선 계획 및 실적을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